

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 보고서

2025. 10. 23. (목)
보건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9. 25. 정윤주 의원 외 16인 (의안번호 523호)
- 나. 회부일자: 2025. 10. 14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
- 제31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【2025. 10. 20. 상정·원안가결】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정윤주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성북구 내 공공장소에서 음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·경제적 비용을 줄이고, 신체·정신적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, 금주구역 지정 및 해당 구역 내 음주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고, 알코올 의존 치료 연계를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과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본 조례의 목적 및 용어 규정(안 제1조~안 제2조)
- 금주구역 지정·변경 등의 규정(안 제3조~안 제5조)
- 교육 및 홍보, 연구 단체 지원 등의 규정(안 제7조~안 제8조)
- 알코올 의존 치료 및 연계 규정(안 제11조)
- 과태료 규정(안 제12조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국민건강증진법」제3조, 제8조의4, 제34조
- 예산조치 : 필요시 반영
- 협의사항 : 건강정책과
- 입법예고 : 2025. 9. 30. ~ 2025. 10. 4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강영숙)

가. 개요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「국민건강증진법」의 개정(2020.12.29.)을 반영하여, 금주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알코올 의존 치료 연계를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

※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8조의4(금주구역 지정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, 설치 방법 등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(본조 신설: 2020.12.29.)

- 현행 조례에서는 음주폐해 예방과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‘음주청정지역’으로 지정·관리하도록 하였으나,

※ 25. 10. 현재 조례상 ‘음주청정지역’으로 지정된 장소는 없음

- 상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내 음주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에, 금주 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○ 안 제1조(목적) 정비

조례의 목적을 구민의 건강증진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·신체적·사회 경제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비함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제1조(목적) -- 조례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·신체적·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--- 구민-----. |

○ 안 제2조(정의) 제3호 정비, 제4호 신설

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상위법 체계에 맞추어 '음주청정지역'을 '금주구역'으로 정비하고, '금주' 및 '금주구역'의 정의를 신설하여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

<신·구조문대비표>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3. "음주청정지역"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. <u><신 설></u> | 제2조(정의) -----. 3. "금주"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. 4. "금주구역"이란 「국민건강증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8조의4에 따라 음주를 금지하는 구역을 말한다. |

○ 안 제3조(금주구역의 지정) 제목 및 내용 정비

- 제3조 제목을 '음주청정지역의 지정'에서 '금주구역의 지정'으로 변경함.

이는 2020.12.29. 개정된 상위법을 반영하여 용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- 제1항은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에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

제8조제1항제1호¹⁾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음주로 인한 유해요인을 예방하려는 것임.

-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신설하여 구청장이 금주구역을 지정할 때,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정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도록 하되 지역축제나 행사 등에서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음주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.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함께 고려한 규정임.

<신 · 구조문대비표>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제3조(음주청정지역의 지정)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음주 폐해 예방과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 | 제3조(금주구역의 지정) ① ----- 법 제8조의4에 따라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----- 각 호의 어느 하나----- 금주구역----- . |
| 1. (생 략) <u><신 설></u> | 1. (현행과 같음) |
| 2. (생 략) <u><신 설></u> | 2.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|
| 3. 버스 정류소 · 택시 정류장 (신설 201 5.11.5, 개정 2021.3.18.) | 3. (현행 제2호와 같음) |
| 4. (생 략) | 4. 버스 정류소 · 택시 승차대 <u><삭 제></u> |
| ②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.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 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. | 5. (현행 제4호와 같음) ② -----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」 제5조에 따라 ----- 설치 또는 부착---. ③ ----- 금주구역----- ----- . |

1)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8조(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)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(이하 "학교경계등"이라 한다)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·고시하여야 한다.

1. 절대보호구역: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(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)

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|
| <u><신 설></u> |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와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 |
| <u><신 설></u> |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 |
| <u><신 설></u> | ⑥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. |

○ 안 제5조(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등) 신설

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금주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, 이에 따른 절차를 규정하여 금주구역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신설함.

○ 안 제11조(알코올 의존 치료 및 연계) 신설

구청장은 음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이 체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연계하는 규정을 신설함.

○ 안 제12조(과태료) 신설

법 제34조제3항제1호²⁾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 구청장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하고, 그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르도록 하여 금주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규정을 신설함.

다.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「국민건강증진법」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주구역을 지정하고, 해당 구역 내 음주자에게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,

2) 「국민건강증진법」제34조(과태료)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신설 2010.5.27, 2016.3.2, 2017.12.30, 2020.12.29>
 1.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

- 현행 조례에서 운영 중이던 '음주청정지역' 제도를 법률 용어인 '금주구역'으로 정비함으로써 용어 체계를 일원화하고, 금주구역에 학교 절대보호구역을 추가 하며, 금주구역 지정 절차, 알코올 의존 치료 및 연계, 과태료 등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, 조문 표현을 정비하고 문장을 명확하게 조정하는 등 금주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
- 다만, 금주구역 지정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내 일정한 장소에서의 음주 행위를 제한하여 공공질서 유지, 어린이·청소년 보호, 주민 안전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나, 일부 지역주민의 반발이 있을 수 있음. 따라서 공공장소 음주 폐해와 음주 조장 환경, 주민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, 안내·홍보 및 필요시 예외 허용을 병행하여 금주구역이 원활히 지정·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회의록 참고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 보고서

2025. 10. 23. (목)
보건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9. 25. 양순임 의원 외 20인 (의안번호 522호)
- 나. 회부일자: 2025. 10. 14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
- 제31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【2025. 10. 20. 상정·원안가결】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양순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현재 성북구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 중인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여,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(안 제3조제1항제2호가목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
- 사전협의 : 건강관리과
- 입법예고 : 2025. 9. 30. ~ 2025. 10. 4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강영숙)

가. 개요

- 본 개정안은 현재 성북구민 중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 중인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모든 구민으로 확대하여,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
- 대상포진은 수두-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, 수포성 발진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며, 방치 시 근육마비, 실명, 뇌수막염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음.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면역력이 저하된 60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게 1회 예방 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나 국가예방접종 대상사업에는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백신 종류에 따라 시중가가 15만원 ~ 60만원 수준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큰 실정임
※ 백신 종류별 시중가 : 생백신(1회 접종) 약 15만원 / 사백신(2회 접종) 총 50만원~60만원
- 또한, 2023. 4.2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한 대상포진 진료 현황 발표 자료에 따르면, 2021년 대상포진 환자중 60세 이상이 42.4%를 차지하였으며, 연령대별 진료비는 60세 이상에서 24만원~38만원 수준으로 나타남. 2021년 총 진료비는 1,661억원으로 2017년(1,484억원)대비 11.9% 증가(177억원)한 것으로 분석됨. 이는 고령화에 따른 대상포진 관련 진료비 부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.

출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(2023. 4. 21),

< 2021년 '대상포진' 질환 연령대별 >

(단위: 명, %)

| 전체 | 9세이하 | 10대 | 20대 | 30대 | 40대 | 50대 | 60대 | 70대 | 80세이상 |
|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722,257 | 3,012 | 14,184 | 43,185 | 79,739 | 114,682 | 161,518 | 172,144 | 90,764 | 43,029 |
| (100) | (0.4) | (2.0) | (6.0) | (11.0) | (15.9) | (22.4) | (23.8) | (12.6) | (6.0) |

< 2021년 '대상포진' 질환 연령대별 1인당 진료비 >

(단위: 천원)

| 전체 | 9세이하 | 10대 | 20대 | 30대 | 40대 | 50대 | 60대 | 70대 | 80세이상 |
|-----|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|
| 230 | 119 | 189 | 183 | 185 | 191 | 213 | 245 | 282 | 381 |

< 2017년~2021년 '대상포진' 질환 총 진료비 >

(단위: 백만 원)

| 2017년 | 2018년 | 2019년 | 2020년 | 2021년 | 증감률 (17년대비) | 연평균 증감률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148,406 | 158,811 | 165,894 | 164,759 | 166,131 | 11.9% | 2.9% |

- 참고로, 2025년 10월 현재 서울시 자치구 대상포진 지원 대상자 기준을 보면, 16개 자치구는 취약계층만 지원, 65세 이상 전체 지원은 6개구(용산·성동·도봉·노원·강남·송파), 70세 이상 전체 지원은 1개구(동작)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됨.

나. 주요내용

○ 안 제3조(지원대상), 대상자 확대

- 제1항제2호의 지원대상을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(65세이상)에서 65세이상 모든 성북구민으로 확대하는 것임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3조(지원 대상)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| 제3조(지원 대상) ① ----- ----- ----- |
| 1. 인플루엔자 (생 략) | 1. (현 행과 같음) |

| | |
|---|--|
| <p>2. 대상포진: 접종일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p> <p>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(65세 이상)</p> <p>나. (생략)</p> <p>3. 백일해 (생략)</p> | <p>2. ----- ----- -----</p> <p>가. 65세 이상의 구민</p> <p>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|
|---|--|

- 이에 따라 대상포진 예방접종을, 접종일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구민에게 1회에 한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게 됨.
- 집행부 예산추계 자료에 따르면 사업 초기와 중장기 소요 비용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. 사업초기인 2026년에는 약 25억 3,500만원으로 소요 비용이 가장 크나, 예방접종이 1회에 한하여 지원되기에 대상자수가 점차 감소하여 2027년에는 약 4억 5,800만원, 2028년 이후에는 약 2억 3,000만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

※ 비용추계 (집행부 제출 자료), 1인 대상포진 백신비는 78,000원으로 산출

- 2026년 32,503명(65세 이상 인구 81,259명의 40%), 25억 3,500만원
- 2027년 5,883명(미접종자 일부 + 65세도래자 40%), 4억 5,800만원
- 2028년 이후 약 3,000명(미접종자 일부+65세도래자 40%), 약 2억 3,000만원

다.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현행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(65세이상)에게만 지원하던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65세 이상 모든 성북구민으로 확대함으로써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고령층 전체의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

< 그간 '대상포진' 사업 추진 현황 >

- ▶ 사업대상 : 접종일 현재 주민등록을 둔 구민으로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
- ▶ 사업기간 : 2024. 1.~ 계속
- ▶ 접종주기 : 1회 접종(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)
- ▶ 접종백신 : 스카이조스터(생백신)
- ▶ 접종비용 : 무료(백신비 78,000원)

| 구분 | 예산액 | 65세이상 | 사업대상 (기초수급자) | 목표인원 | 접종자수(접종률) | 비고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2024년 | 387,057천원 | 80,562명 | 7,928명 | 3,700명 | 3,043명(38%) | |
| 2025.9월현재 | 68,777천원 | 83,682명 | 8,503명 | 650명 | 537명(83%) | 미접종자+65세도래자 |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³⁾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12조⁴⁾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예방 및 고령층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책무를 지니고 있음.
- 이에 고령층에서 발생률이 높고 치료비 부담이 큰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, 치료비 부담과 합병증 위험을 완화하고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, 본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현재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은 비급여 임의접종으로 전액 구비사업으로 운영되어야 함. 따라서 사업대상자 범위, 백신 수급 및 예산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효성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, 향후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의 편입을 위한 중앙정부와의

3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,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
4)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제12조(건강증진과 의료제공)
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·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·요양 제도 등을 확립·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협의 추진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참고

서울시 자치구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자 현황(2025. 10 현재)

- 취약계층 선별 지원 : 16개구
- 전체 지원 : 65세 이상 6개구, 70세 이상 1개구

| 번호 | 보건소명 | 접종 대상자 | 예산액 (천원) | |
|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| | | 2024년 | 2025년 |
| 1 | 종로구 |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| 114,750 | 8,000 |
| 2 | 중구 | ★★ | ★★ | ★★ |
| 3 | 용산구 | 65세 이상 | 596,369 | 870,400 |
| 4 | 성동구 | 65세 이상 | 1,111,200 | 540,000 |
| 5 | 광진구 |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| 73,400 | 32,850 |
| 6 | 동대문구 |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| 17,000 | 34,000 |
| 7 | 중랑구 |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| 640,000 | 100,000 |
| 8 | 성북구 |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| 387,000 | 68,777 |
| 9 | 강북구 |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| 540,000 | 382,478 |
| 10 | 도봉구 | 65세 이상 | 334,556 | 1,736,780 |
| 11 | 노원구 | 65세 이상 | 1,768,490 | 10,030 |
| 12 | 은평구 |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| 104,610 | 129,493 |
| 13 | 서대문구 |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| 36,490 | 36,490 |
| 14 | 마포구 |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| 291,830 | 55,000 |
| 15 | 양천구 |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| 478,440 | 49,134 |
| 16 | 강서구 |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| 25년 시행 | 612,000 |
| 17 | 구로구 | ★★ | ★★ | ★★ |
| 18 | 금천구 |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| 27,000 | 27,000 |
| 19 | 영등포구 |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, 의료급여 | 25년 시행 | 120,000 |
| 20 | 동작구 | 70세 이상 | 60~69세 기초생활수급자 | 1,181,866 |
| 21 | 관악구 |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| 25년 시행 | 322,400 |
| 22 | 서초구 | 65세 이상 기초생활, 차상위 | 87,668 | 87,668 |

| | | | | | |
|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23 | 강남구 | 65세 이상('25.9.26.개정) | | 96,000 | 96,000 |
| 24 | 송파구 | 65세 이상('25.10.10.개정) |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| 400,000 | |
| 25 | 강동구 |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| | 65,000 | 287,007 |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회의록 참고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사 보고서

2025. 10. 23. (목)
보건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10. 1. 성북구청장 제출 (의안번호 513호)
- 나. 회부일자: 2025. 10. 14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
- 제31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【2025. 10. 20. 상정·원안가결】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황원숙 보건소장)

가. 제안이유

- 우리구에서 위탁 운영 중인 성북구 치매안심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『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 제4조의2(승인 및 동의) 제1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위탁시설 : 성북구 치매안심센터
- 위탁기간 : 2026. 1. 1 ~ 2028. 12. 31(3년)
- 위탁방법 : 「수탁기관 선정위원회」 심의에 의해 선정
- 위탁사무내용
 -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

- 치매 환자의 등록관리
- 치매 등록 통계 사업의 지원
- 치매의 예방·교육 및 홍보
- 치매 환자를 위한 단기 쉼터의 운영
- 치매 환자의 가족 지원 사업
- 그 밖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치매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○ 기준 위탁현황

| 기관명 | 소재지 | 규모 | 위탁기간(최초 위탁일)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건국대학교 병원 |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63, 성북구보건소 5층 (본소) | 549.9m ² | 2023. 1. 1.~2025. 12. 31. |
| | 서울시 성북구 한천로 568, 장위석관보건지소 3층 (분소) | 182.8m ² | (2007. 7. 1.) |

다. 관련근거

○ 관계법령 : 「치매관리법」 제17조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4조(운영의 위탁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강영숙)

가. 개요

-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를 재위탁(공개모집) 추진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(이하 '성북구 민간위탁 조례') 제4조의25)에 따라 성북구의회

5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2(승인 및 동의)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(이하 "구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자치사무의 경우 재위탁을 포함한다.

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.

<민간위탁 대상 시설 현황>

| 시설명 | 위치 | 규모 | 종사자수 | (기존)위탁법인 협약기간 | '25년 사업비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| | | |
|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|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63, 성북구보건소 5층 (분소) | 549.9m ² | 23명 | 진국대학교병원 2023. 1. 1~2025.12.31 (3년) | 1,865,006천원 (국38:시30:구32) |
| | 서울시 성북구 한천로 568, 장위석관보건지소 3층 (분소) | 182.8m ² | 1명 | | |

나. 주요내용

-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위탁기간이 2025.12.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위해 공개모집을 실시하고,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체결일로부터 3년간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려는 것임.

다. 민간위탁의 적정성

- 성북구 치매안심센터는 「치매관리법」 제17조(치매안심센터의 설치)제1항⁶)에 따라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고자 관할 보건소 내에 설치한 시설로,
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4조(운영의 위탁)⁷⁾에

6) 「치매관리법」제17조(치매안심센터의 설치)^① 시 · 군 · 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(이하 "치매안심센터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7)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(운영의 위탁)

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, 보건의료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. (개정 2015. 09. 30)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하는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(이하 "수탁기관"이라 한다)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(개정 2015. 09. 30)

1. 사무를 위탁하는 기관 및 수탁기관 또는 단체 (개정 2015. 09. 30)

2.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

3.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

4.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

5. 그 밖에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(개정 2015. 09. 30, 2020.12.31.)

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, 재위탁 할 수 있다. (개정 2015. 09. 30)

따르면,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, 보건의료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,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따라서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치매 관련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으로의 위탁 운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
라. 종합의견

-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「성북구 민간위탁 조례」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의회 동의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로 수탁법인을 선정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회의록 참고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④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